



清於包拯 白於孟黃

구정살림을 주민과 함께!

2012. 7. 24(화)

2012 주민참여 예산학교

일은 내 일처럼 예산은 내 돈처럼



대전광역시 대덕구

<http://www.daedeok.go.kr>

행 사 일 정

□ 행사개요

- ❖ 일 시 : '12. 7. 24(화) 15:00 ~ 17:00
- ❖ 장 소 : 대덕문예회관(2층 대강당)
- ❖ 참석대상 : 예산참여 구민위원, 동 지역회의 위원, 관심있는 주민 등
- ❖ 주요내용 :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강사 : 원구환 교수)

□ 시간계획

일 자	시 간 계 획			교 육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7. 24(화)	15:00	15:01	1'	개회 및 국기에 대한 경례	예산파트장
	15:01	15:21	20'	구청장 인사말씀	구 청 장
	15:21	15:35	14'	2012 재정전망 및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팀장
	15:35	16:55	80'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원구환 교수 (한남대 행정학과)
	16:55	17:00	5'	향후 일정 안내 및 폐회	예산파트장

MEMO

목 차

1	예산의 기초 이해	1
2	우리구의 재정현황	11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	21
4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37
부록 1	예산 · 회계 용어	59
부록 2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81

구 정 여 건

지 역 특 성

- ❖ 계족산·대청호반 등 천혜의 자연·지역 여건을 갖춘 생태·학습 도시
- ❖ 동춘당·계족산성 등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문화의 중심도시
- ❖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경부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산업·교통 중핵도시

기 본 현 황

- 인 구 : 205,339명(75,759세대) / 市의 13.55%
- 면 적 : 68.47km²(그린벨트 60.8%) / 市의 12.7%
- 행정구역 : 12개동 (345개통, 1,804개반)
- 공무원수 : 정원 630명 (현원 619명)
- 기 구 : 3본부 17개팀, 직속기관(1), 사업소(1), 동(12), 의회사무과
- 예 산 : 216,353백만원 / 재정자립도 21.58%

구 정 목 표

구정목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로하스 「생태·학습」 도시 건설**

핵심전략

-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생태도시 건설
- ➡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
- ➡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 ➡ 참여자치 메카로서의 위상 강화
- ➡ 경영·홍보·고객 감동의 행정혁신 구현

민선5기 구정의 방향

구정비전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

구정목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건설

구정방향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 건설

- ❖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 ❖ 독특한 고유문화 창출
- ❖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
- ❖ 늘푸른 도시환경 조성

추진전략

대덕구는 다릅니다.

5대역점 시책

녹색·생태
도시 조성

지역별 개발
사업 가시화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조성

참여자치 메카
선도

경영홍보·고객
감동의 행정
혁신 추진

구정 기반

공직자는 “정령과 열정·변화”, 주민은 “참여와 학습·소통”

200리 로하스길

Enjoy!



200리 로하스길

- 1 3대 하천길 (약5시간)
대덕구청~16Km~갑천금강합류점
- 2 로하스 해피로드 (약3시간)
갑천금강합류점~8.8Km~대청공원
- 3 대청호 누리길 (약9시간)
대청댐~14Km~계족산임도
- 4 계족산 황톳길
14Km (약5시간)
- 5 산디마을 산신제길
5Km (약3시간)
- 6 덕을 품은 길
4Km (약2시간)
- 7 동춘당 생애길
5Km (약3시간)
- 8 100세 건강길, 정려의길,
행복의거리, 청림길,
한남대둘레길, 한남로디자인길



황톳길
봉황정
봉황마당
동춘당



제1절 예산의 기초 이해

제 1 절

■ 예산의 기초 이해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 예산의 개념

-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나. 예산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회계를 말하며, 보통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 주차장,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 사업에 적용되는 기타특별회계가 있음.

- 예산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기금**”이란 것인데,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2)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전년도말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본예산**”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됨.

2. 예산의 운영원칙

- 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임.

《예산원칙의 내용 및 근거》

요 목	근 거	내 용
예산총계주의원칙	▪ 지방재정법 §34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단일예산주의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회계설치 : 지방재정법 §9 ▪ 추경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45	▪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예산통일의원칙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 §41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 §40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 지방재정법 §7	▪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예산사전의결원칙	▪ 지방자치법 §127	▪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의회의결
예산공개원칙	▪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 §133), 결산결과(지방자치법 §134),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60)를 개별적으로 구성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 : 지방재정법 §47, §49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건전재정 운영원칙	▪ 지방자치법 §122, 지방재정법 §3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원칙	▪ 지방재정법 §15 〈예외〉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16)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 지출 (예산총계주의와 같은 맥락)
성과중심원칙	▪ 지방재정법 §5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요구

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가. 세입예산이란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나. 세입예산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짐.

1) 자체재원

(가)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됨.

광역시세 (9개)	취득세, 주민세(균등할),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세 (4개)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방세목간소화로 변경되는 세목임.

(나)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며,
- 정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 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순세계잉여금 ③ 전입금 ④ 용자금 원금 수입 ⑤ 기타수입 ⑥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다) 지방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SOC사업 등 투자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부채를 의미함.

2) 의존재원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이에 포함됨.

(가) 보조금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외에 시·도로부터 시·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 교부금제도임.

(나)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인 세원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교부세 중에서 96%는 보통교부세, 4%는 특별교부세로 내국세 총액의 0.94%는 분권교부세로 배분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해 주는 제도로, 현재 모든 자치구와 시·군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교부단체(76) : 자치구(69), 서울특별시(1), 경기 일부(6)

4.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가.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 세출예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경비의 지출을 말함.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12.2.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을 정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경비(지방의회관련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통반장활동비) 등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나. 세출의 분류

1) 기능별 분류

- 지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 (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 분석간 기능 분류를 일원화하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13개분야로 나누어짐.

2) 성질별 분류

- 경비의 경제적 성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내며, 경비의 사용된 용도와 국민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함.
-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목으로 분류하고 하위에 통계 및 내부관리를 목적으로 통계목을 두고 있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구 분	용 도
8개 그룹	▪ 예산편성목의 상위그룹
38개 편성목	▪ 세출예산의 사용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 예산서에 표시되는 과목
122개 통계목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의 통계관리 대상 ▪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5. 예산편성 절차





제2절 우리구 재정현황

제 2 절

■ 우리구 재정현황

1. 2012년도 재정상황

- 세입구조가 취약하나 지방세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재산세가 소폭 증가하였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국시비보조금은 계속 대폭 증가되는 반면,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으로 구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환경 등 주민 요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2012년 우리구 예산규모》

(2012년도 당초예산, 단위 : 억원)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¹⁾		
세 입 과 목	예산액	구성비	세 입 과 목	예산액	구성비
계	2,115	100.0%	계	49	100.0%
자 체 수 입	456	21.6%	자 체 수 입	42	85.8%
지 방 세	311	14.7%	지 방 세	-	-
세 외 수 입	145	6.9%	세 외 수 입	42	85.8%
의 존 수 입	1,659	78.4%	의 존 수 입	7	14.2%
지 방 교 부 세	43	2.0%	지 방 교 부 세	-	-
조 정 교 부 금	300	14.2%	조 정 교 부 금	-	-
보 조 금	1,316	62.2%	보 조 금	7	14.2%

2. 우리구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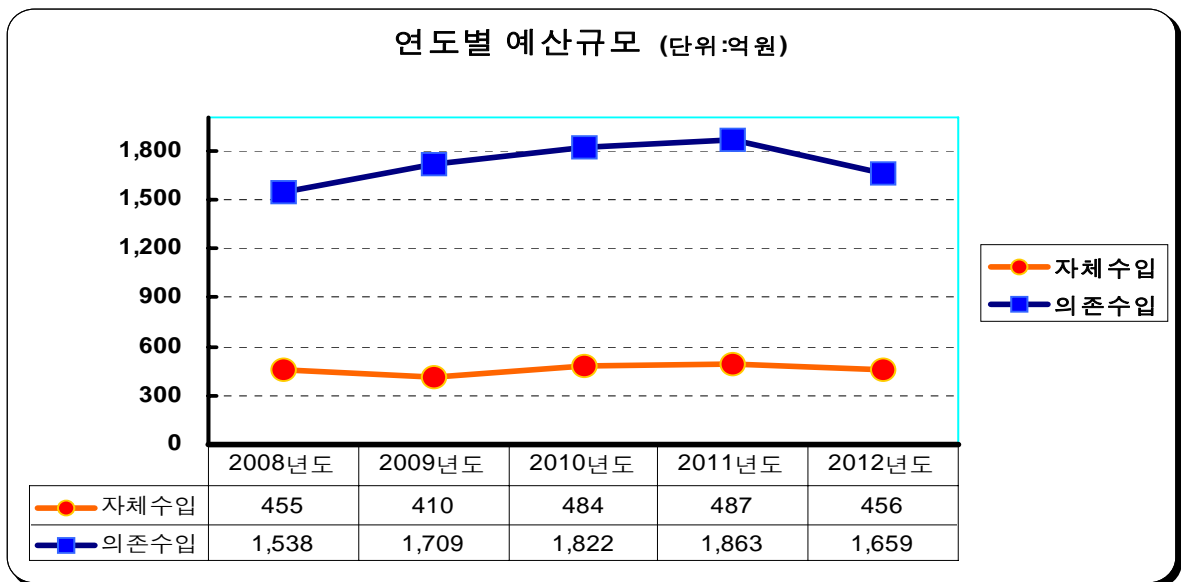
가. 연도별 예산규모

-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기준 자체수입 22%, 의존수입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세입규모를 보면 의존수입(보조금, 조정교부금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세입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최종		2009년최종		2010년최종		2011년최종		2012년 당초	
	세입	증감률	세입	증감률	세입	증감률	세입	증감률	세입	증감률
계	1,993		2,189	9.8	2,306	5.3	2,350	1.9	2,115	△10.0
자체수입	455		410	5.5	484	18.1	487	0.6	456	△6.4
의존수입	1,538		1,709	11.1	1,822	6.6	1,863	2.3	1,659	△12.3
지방채	-		70	-	-	-	-	-	-	-
자립도(%)	18.0		20.9		20.0		20.7		21.6	



- 최근 5년간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12년도 당초예산은 '08년도와 비교하면 규모가 무려 6.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임.

1) 대덕구에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음.

《연도별 세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당 초	1,571	1,642	4.5	1,838	11.9	2,005	9.2	2,164	7.9
최 종	1,993	2,189	9.8	2,306	5.3	2,399	4.0	-	-

나. 분야별 예산 규모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문화및체육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재정비축진사업·도로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도 크게 증가하였음.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2011년도 당초	2012년도 당초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0,496	216,353	15,857	7.9%
일 반 공 공 행 정	10,869	11,988	1,119	10.3%
공 공 질 서 및 이 전	395	437	42	10.6%
교 육	1,440	3,472	2,032	141.2%
문 화 및 관 광	3,744	3,582	△162	△4.3%
환 경 보 호	3,367	5,854	2,485	73.8%
사 회 복 지	99,352	103,475	4,123	4.2%
보 건	4,224	4,830	608	14.4%
농 립 해 양 수 산	2,762	2,481	△281	△10.2%
산 업 · 중 소 기 업	621	444	△177	△28.5%
수 송 및 교 통	21,715	24,653	2,938	13.5%
국 토 및 지 역 개 발	8,614	7,892	△722	△8.4%
기 타	43,393	47,245	3,852	8.9%

※ 기타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예비비

《조직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분과위원회별	부서명	2011년	2012년	비교증감	증감률
4개분과	총계	200,496	216,353	15,857	7.9%
행정지원	소계	49,896	55,330	5,434	10.9%
	기획감사팀	5,223	6,058	835	16.0%
	총무팀	29,105	32,241	3,136	10.8%
	자치행정팀	2,390	4,562	2,172	90.9%
	(동주민센터)	3,608	3,325	△283	△7.9%
	홍보문화팀	2,968	2,658	△310	△10.5%
	세무팀	587	672	85	14.5%
	민원지적팀	874	614	△260	△29.7%
	대덕구평생학습원	3,785	3,833	48	1.3%
	의회사무과	1,356	1,367	11	0.8%
사회산업	소계	115,448	123,290	7,842	6.8%
	경제팀	3,576	2,768	△808	22.6%
	복지지원팀	28,651	29,205	554	1.9%
	주민복지팀	69,018	73,384	4,366	6.3%
	환경관리팀	579	657	78	13.3%
	청소위생팀	7,201	10,074	2,873	39.9%
	보건소	6,423	7,202	779	12.1%
도시교통	소계	28,791	29,261	470	1.6%
	도시관리팀	2,157	4,422	2,265	105.0%
	공원녹지팀	6,737	3,501	△3,236	△48.0%
	건축팀	1,514	2,041	527	34.8%
	교통팀	18,383	19,297	914	5.0%
건설재난	소계	6,361	8,472	2,111	33.2%
	건설팀	5,020	6,841	1,821	36.3%
	생활안전팀	1,341	1,631	290	21.6%

다. 2012년 대전시 예산규모 비교

- 2012년도 대전시 전체 당초 예산규모는 4조 2,024억원으로 시본청은 2조 9,120억원, 자치구는 1조 2,904억으로 그 중 대덕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2,164억원의 규모임.

《단체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단체별	총계 (A+B)	일반회계 ²⁾ (A)	특별회계 ³⁾ (B)		자립도 (%)	자주도 (%)	구성비(%)
			기타	공기업			
합계	4,202,425	3,460,953	344,115	397,357	52.3	77.2	100.0
시본청	2,911,992	2,239,538	275,097	397,357	52.7	71.8	69.3
자치구계	1,290,433	1,221,415	69,018	-	24.6	39.9	30.7
동구	273,000	250,695	22,305	-	16.5	35.8	6.5
중구	243,607	229,102	14,505	-	20.3	40.1	5.8
서구	323,073	311,918	11,155	-	26.2	39.2	7.7
유성구	234,400	218,200	16,200	-	38.3	46.8	5.6
대덕구	216,353	211,500	4,853	-	21.6	37.8	5.2

《단체별 세출구조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단체별	합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소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계	4,202,425	3,440,367	1,990,944	1,449,423	533,472	228,586
시본청	2,911,992	2,426,349	1,161,556	1,264,792	266,007	219,636
자치구계	1,290,433	1,014,018	829,388	184,630	267,464	8,950
동구	273,000	222,016	185,275	36,741	49,791	1,193
중구	243,607	184,778	156,138	28,639	57,249	1,581
서구	323,073	252,513	210,552	41,961	67,708	2,852
유성구	234,400	184,579	133,334	51,245	48,467	1,354
대덕구	216,353	170,133	144,089	26,044	44,250	1,971

2)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예산이라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라 함

3)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

《연도별 재정자립도 변화》

(단위 : %)

단 체 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 본 청	67.4	61.2	54.5	52.1	51.9	52.7
자치구평균	25.8	24.4	22.9	20.8	23.9	24.6
동 구	17.7	17.8	16.4	12.2	16.1	16.5
중 구	23.0	21.4	17.7	18.4	20.4	20.3
서 구	28.9	26.7	26.4	22.5	26.2	26.2
유 성 구	39.7	39.1	35.4	32.8	36.3	38.3
대 덕 구	20.7	18.0	20.9	20.0	20.7	21.6

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교

○ 단체별 최고·최저

(단위 : %)

구 분	자 치 구		시		군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단 체 명	서울 서초구	부산 영도구	경기 성남시	전북 남원시	울산 울주군	전북 고창군
자 립 도	81.5	13.6	63.0	8.3	46.3	7.8
평 균	36.0		37.1		16.4	

○ 보조사업 비중4)

(단위 : %)

구 분	자 치 구		시		군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단 체 명	광주 북구	서울 용산구	전북 김제시	경기 과천시	전남 진도군	경기 여주군
비 중	72.1	27.0	64.0	20.5	67.5	42.5
평 균	53.1		46.6		54.9	

○ 자체사업 비중5)

(단위 : %)

구 분	자 치 구		시		군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단 체 명	서울 강남구	광주 북구	경기도과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여주시	전남 곡성군
비 중	40.3	10.1	58.9	18.6	38.4	13.6
평 균	19.8		31.5		26.2	

4) 보조사업비중 : 자치단체의 총예산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

5) 자체사업비중 :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총예산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

4. 2013년 우리구 재정운영 여건

세입 전망

- **세입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지방세는 지가상승 및 세원확충 노력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
 -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다소 감소 예상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

세출 전망

- **법적·의무적 경비, 무상보육 확대 등 세출수요 큰폭 증가**
 - 인건비,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인 법적·의무적 지출은 크게 증가
 - 무상보육, 무상급식 확대,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 새로운 세출수요 발생
 - 계속사업 마무리 및 구민 복리를 위한 복지·문화·환경 등 주민 요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운영 방향

- 균형재정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뒷받침에 역점 전략적 지원
-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투자하고 경상비는 초긴축 운영 확대
-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의 완공위주 집중 투자
-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감안,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제 3 절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1. 그동안 추진과정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05. 12)
- 중부권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05. 12)
- 제1기 예산참여 지역회의 및 구민위원회 위원 구성운영('06. 4)
 - 지역참여단 120명내외, 구민위원 100명 선정/ 임기 2년
- 제4기 지역회의 및 구민위원회 위원 선정('12. 4)
 - 지역참여단 108명, 구민위원 100명 선정/ 임기 2년(~'14.4.27)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6회
- 지역회의 운영 : 6회
 - 2010년도 / 동별 중점투자사업 결정서 제출(44건 71억원)
 - 2011년도 / 동별 중점투자사업 결정서 제출(52건 43억원)
- 구민(분과)위원회 운영 : 6회
 - 2010년도 / 124건(지역회의 44, 사업부서 80) 144억원 자체사업 우선순위 결정
 - 2011년도 / 145건(지역회의 52, 사업부서 93) 177억원 자체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 6회
 -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최종 심의
- 예산안 의회제출('11. 11)
 - 2011년도 분과위원회 검토사업중 92건 84억원 '12년도 본예산에 반영
-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정비('12. 4)
 - 4개분과위원회 100명 구성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12. 7)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 예산반영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건 의		반 영		비 고 (B/A)
	건 수(A)	예 산	건 수(B)	예 산	
2010년도	146	7,922	120	4,515	82.2%
2011년도	108	8,273	80	2,984	74.1%
2012년도	122	14,737	92	10,360	75.4%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사전파악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투입
- 구살림의 투명한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여문화 확산

《 2011년도 구민위원회 운영 현황 》



구민위원회 총회(10.18일)



분과별 결과보고(10.20일)



행정지원분과



사회산업분과



도시교통분과



건설재난분과

3.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적 구성은 각 동별 10명씩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120여명의 지역참여단과 공개 모집된 구민 65명, 지역대표단에서 각 2명씩 추천하는 지역대표 24명,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11명으로 구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구민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방 법	인 원
계		100명
일반시민	공개모집	65명(총인원1/20이상)
지역대표	지역참여단 중 추천	24명(동별 2명)
직능/시민단체 등	단체추천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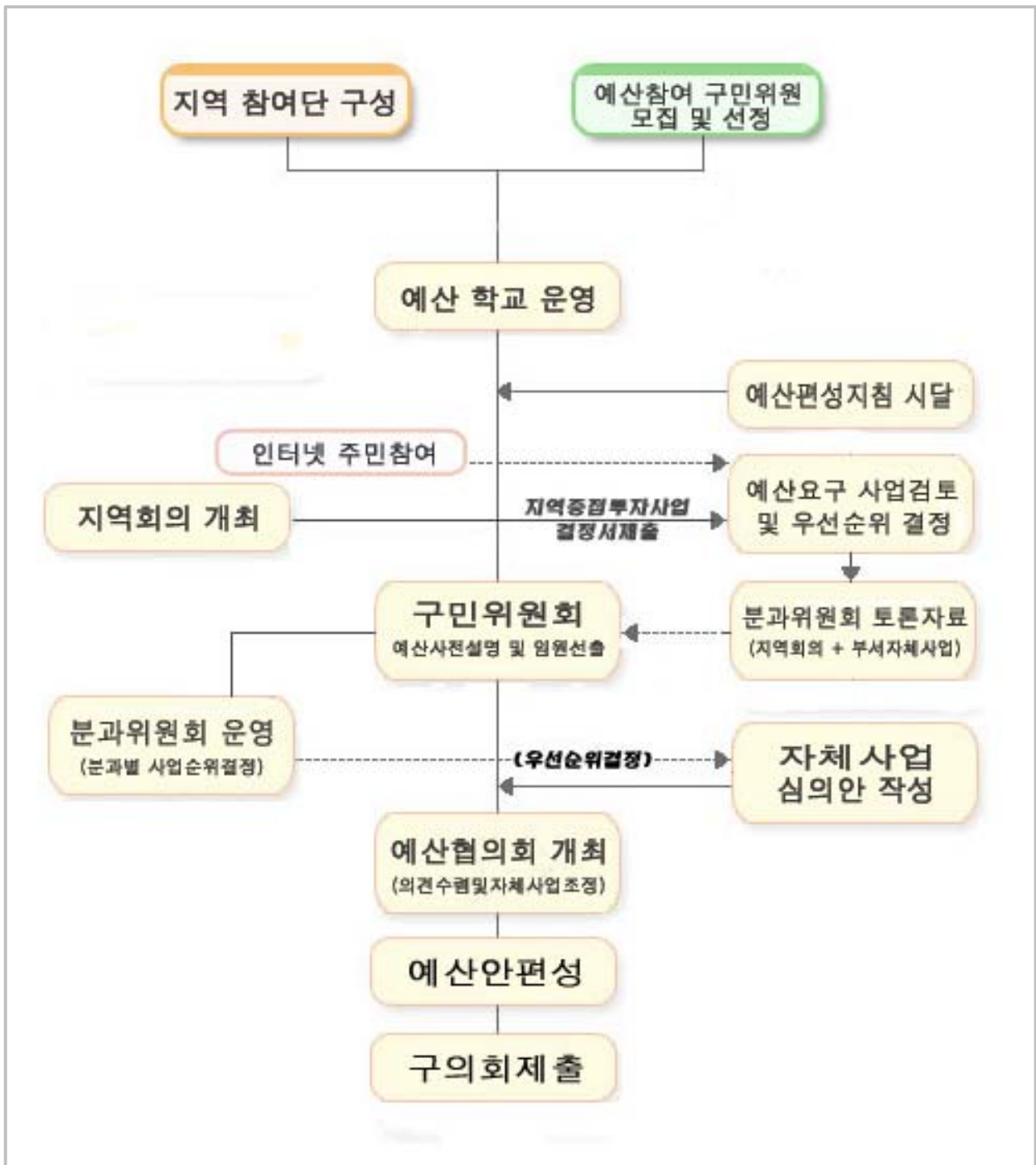
- 지역참여단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회의 개최를 통하여 최초 작성되는 예산편성안의 기초 자료 제공과 구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최초 작성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토의와 분과회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기능도 가지게 됨.

《분과회 구성현황》

구 분	해 당 부 서	구성인원
계		100
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팀, 총무팀, 자치행정팀(동), 홍보문화팀, 세무팀, 민원지적팀, 대덕구평생학습원, 의회사무과	25
사회산업분과위원회	경제팀,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 보건소	25
도시교통분과위원회	도시관리팀, 공원녹지팀, 건축팀, 교통팀	25
건설재난분과위원회	건설팀, 생활안전팀	25

- 분과회와 토론회 과정을 거친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행정절차를 거쳐 각 분과의 위원장과 집행부의 실무팀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협의회 회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 편성된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1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4. 주민참여예산제 흐름도



【붙임 1】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당초예산 편성기준)

구 분	분과위원회 검토사업		2012년도 예산 편성결과			비 고
	건 수	예 산 액	건 수	예 산 액	반영률	
계	122	14,737	92	10,360	75.41%	
지역회의 건의	29	1,425	25	1,365	86.21%	
사업부서 건의	93	13,312	67	8,995	72.04%	

※ 당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자체사업에 한함.

(단위:천원)

연번	구 분	사 업 명	예산반영	비 고
	계	92건	10,360,083	
1	부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00,000	
2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330,000	
3	"	관용차량 구입	56,000	
4	"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30,000	
5	"	신탄진동 부지 매입	124,500	
6	"	인터넷 및 시구간 백본장치 교체 및 이중화	59,000	
7	"	통합백업디스크 구입	125,000	
8	"	개인용컴퓨터 구입	135,000	
9	"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13,800	
10	"	2012 금강 로하스축제	88,160	
11	"	2012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80,000	
12	"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45,000	
13	"	1동 1체육시설 확충	30,000	
14	"	민속보존마을 행사	7,000	
15	"	어르신 생활체육 시 대회 참가	5,000	
16	"	주민생활체육 시 대회 출전	20,000	
17	"	한학예절체험교실	5,000	

(단위: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예산반영	비고
18	부서	종목별 생활체육 시 대회 참가	21,000	
19	"	노인게이트볼 교실 운영	21,600	
20	"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운영지원	4,000	
21	"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재·명소 탐방	10,000	
22	"	대덕스포츠클럽 운영	12,000	
23	지역	비래골 체육시설 추가설치	6,000	
24	"	범2동 범바위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3,000	
25	부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엔진 교체	44,000	
26	"	스크류냉동기 오버홀작업(신탄진도서관)	5,500	
27	"	이동식 서가 구입(안산도서관)	16,450	
28	"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	20,000	
29	"	대덕꿈나무 영어캠프	16,000	
30	"	소외계층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	9,000	
31	"	대덕학 가족대항 골든벨 대회	5,000	
32	"	개관10주년 행사 및 기념품 제작(신탄진도서관)	1,800	
33	"	로하스 생태도시 『친환경 도시 농업』 추진	9,400	
34	"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30,000	
35	"	농업기반시설 수리	10,000	
36	"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위문	26,000	
37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등학교교복비	22,500	
38	"	아이사랑 안심서비스 지원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녀)	14,784	
39	"	경로당 의자안마기 보급	45,000	
40	"	보육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12,484	
41	"	어린이 날 기념행사	10,000	
42	"	노인의 날 행사	6,000	
43	지역	덕암1통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00	
44	부서	장애인 이동목욕·이송차량 운영	54,000	

(단위:천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예산반영	비 고
45	부서	장애인 행사지원	14,000	
46	"	경로당 및 구지회 기능보강	30,000	
47	"	경로당 환경개보수	20,000	
48	"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62,867	
49	"	충효예교실 운영	8,700	
50	"	노인대학 운영	7,000	
51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등 지원금	5,000	
52	"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337,983	
53	"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	317,346	
54	"	청소위탁대행사업	3,698,544	
55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	1,158,945	
56	"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	611,160	
57	"	로하스 미용뷰티페스티벌	15,000	
58	"	보건소 관용차량 대체 구입	26,000	
59	"	생화학 장비 구입	90,000	
60	"	방역소독 대행 사업비	58,560	
61	지역	삼정동 마을앰프 교체	3,000	
62	"	등마루공원내 우레탄 및 조합놀이대 설치	20,000	
63	"	한남고가차도 체육시설물 설치	20,000	
64	"	덕암동 126-16번지선 등산로 정비	6,000	
65	"	신대동 245-4번지선 도로확장공사	80,000	
66	"	상서동 산7-13번지 일원 등산로공원 조성	10,000	
67	"	노촌공원내 지압시설 설치	5,000	
68	"	법동 바우배기공원내 지압시설 설치	5,000	
69	부서	대청문화전시관 방수공사	5,500	
70	"	매입 청사 리모델링 공사	400,000	

(단위:천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예산반영	비 고
71	부서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지원사업	30,000	
72	"	회덕동주민센터 담장정비공사	35,000	
73	지역	대화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환경 개선공사	4,000	
74	부서	회덕동 주민센터 옥상 및 외벽방수 공사	29,000	
75	지역	대화동 체력단련실 샤워장 설치	16,000	
76	부서	공한지임시주차장 조성	30,000	
77	"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30,000	
78	지역	장동 278번길 도로확장공사	10,000	
79	"	송촌동 290-4번지앞 배수구 설치	1,000	
80	"	아름다운거리(삼호~중리초교간) 경계석 및 보도 정비공사	40,000	
81	"	비래동 558-1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25,000	
82	"	농수산물시장 뒤 배수로 공사	7,000	
83	"	석봉동 417-72번지선 하수도 정비	5,000	
84	"	비래사 진입로(463-2번지) 포장 공사 (재해위험지원사업비/특별교부세)	1,000,000	
85	"	석봉시장 7길 도로 덧씌우기 공사	20,000	
86	"	주거밀집지역 악취방지용 배수커버 설치공사	30,000	
87	"	덕암동 2-3번지선 하수구 정비	15,000	
88	부서	보안등 신설공사	35,000	
89	"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유지보수	50,000	
90	"	공원등 절전공사	20,000	
91	지역 (완료)	효성공원내 공원등 설치	500	
92	지역	중리초교 훼손된 그림 제거 및 벽화 작업	19,000	

[붙임 2]

2011년도 주민참여 지역회의 건의사업 반영결과

(단위:백만원/당초예산 편성기준)

구분	계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건	52	4	3	3	8	4	3	6	4	4	5	7	1
금액	4,389	25	40	103	3,359	74	32	182	191	168	90	110	15

(단위:천원)

연번	건의내용				검토 결과	예산 반영	비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				4,388,500		1,364,500	·불가사업:12건 ·장기과제:11건
1	농수산물시장 뒤 배수로 공사	오정동 705-1번지	하수관 (D=450mm) L=50m, 맨홀 5개소	7,000	반영	7,000	
2	한남고가차도 체육시설물 설치	오정동 233-69번지	4점	12,000	반영	20,000	시비확보 추진
3	효성공원내 공원등 설치	오정동 379-1번지	1개소	500	반영	500	
4	노촌공원내 지압시설 설치	오정동 311-6번지	L=20m B=1.5m	5,000	반영	5,000	
5	대화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대화동 229-25번지	1식	4,000	반영	4,000	
6	대화동 체력단련실 샤워실 설치	대화동 35-334번지	1식	16,000	반영	16,000	
7	두리공원내 조립식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체육시설 설치	대화동 10-3번지	115.5㎡	20,000	장기 과제	-	자율방범대 건물 철거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8	장동347-4번지 부근 복개도로 개설공사	장동 347-4번지 부근 마을입구	A=30㎡	13,000	장기 과제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추진, 장기적 으로 검토할 사항임

(단위:천원)

연번	건의내용				검토 결과	예산 반영	비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9	신대동 245-4번지선 도로확장공사	신대동 245-4번지선	L=80m, B=3→5m	80,000	반영	80,000	
10	장동 278번길 도로확장공사	장동 810번지 ~190번지	개거수로 복개 L=30m	10,000	반영	10,000	
11	비래동 126-6번지 공영주차장 신설	비래동 126-6번지	면적 1,351㎡	2,300,000	장기 과제	-	구재정여건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12	비래동 558-1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비래동 558-1번지선	L=110m, B=6.6m (A=7.26a)	20,000	반영	25,000	
13	비래동 472-1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비래동 472-16번지 일원	L=50m, B=3.3m (A=1.65a)	10,000	불가	-	현재 도로상태가 양호하며 시급성이 떨어짐
14	비래동 239-1번지 일 원 도로포장 및 하 천정비 공사	비래동 239-1번지 일원	L=180m, B=3.0m	-	불가	-	현재 쇄석포장상태로 양호하고, 잡초제거는 자체인력 활용 정비
15	방범용CCTV 설치공사	비래동 559-18 번지, 127-8번지	2대	20,000	불가	-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 관련은 편성 불가(예산편성지침)
16	비래골 체육시설 설치 (추가)	비래동 407번지	2점	6,000	반영	6,000	
17	비래동청사 조명기기 교체	비래동 140-5번지	1식	3,000	반영	-	자체 청사유지관리비 활용 교체
18	비래사 진입로(463-2 번지) 재포장공사	비래동 463-2번지	L=250m, B=6.0m	1,000,000	반영	1,000,000	
19	송촌동 290-4번지 앞 배수구 설치	송촌동 290-4 덕성맨션앞 도로	빗물받이 설치 1개소	1,000	반영	1,000	
20	송촌동 청사 도색	송촌동 460-6번지	1식	13,000	장기 과제	-	청사유지관리 차원 에서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 감안 장기 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단위:천원)

연번	건의내용				검토 결과	예산 반영	비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21	송촌동 1-1번지선 도로포장공사 및 배수로정비	송촌동 1 - 30 번지선 등산로	포장 (L=30m), 배수로설치 (L=30m)	60,000	장기 과제	-	호우피해로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구재정여건 감안 장기적 검토할 사항임
22	송촌동 스포렉스(510번지) 뒤 도로포장 공사	송촌동 510번지 스포츠 뒤 409 - 2	L=280m, B= 2.0m	-	장기 과제	-	시급성은 떨어지나, 송촌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조성시 연계 검토할 사항임
23	주민바라기주민센터 조성	중리동 207-1	1식	10,000	장기 과제	-	구재정여건 감안, 민원실 전체공간에 대한 재배치 등 장기적 검토할 사항임
24	미래공원놀이터 정비	중리동 378-12 번지(미래공원)	탄성포장 157m ²	12,000	불가	-	탄성포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비용과다(매년교체)
25	중리동 112-8번지선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중리동 112-8 번지	A= 21a L=700m	10,000	불가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시급성이 떨어짐
26	아름다운거리 (삼호~중리초교간) 경계석 및 보도정비공사	삼호아파트 ~ 중리초등학교	L=1,600m 보도도색 A=34a	40,000	반영	40,000	
27	삼정하이츠 앞 웬스 설치공사	삼정하이츠 정문 ~ 영진 4거리 구간	안전웬스 설치 L=180m (60경간)	45,000	불가	-	시급성이 떨어지며, 구재정 여건 감안 향후 검토 후 추진
28	중리초교 담장 벽화 작업	중리초등학교 벽면	L = 100m	9,000	반영	19,000	시비확보 추진
29	영진상가 앞 웬스 설치	평강정형외과 ~ 영진사거리 건널목	안전웬스 설치 L=210m (70경간)	53,000	불가	-	시급성이 떨어지며, 구재정 여건 감안 향후 검토 후 추진
30	법1동 새마을문고~ 원예농협간 웬스 설치	새마을금고 ~원예농협	안전웬스 설치 L=120m (40경간)	30,000	불가	-	시급성이 떨어지며, 구재정 여건 감안 향후 검토 후 추진

(단위:천원)

연번	건의내용				검토 결과	예산 반영	비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31	법1동 바우배기공원내 지압시설 설치	바우배기 공원내	L=20m, B=1.5m	5,000	반영	5,000	
32	법2동 보도정비 및 가로수 교체 식재	법2동 192-3번지선	A=15.6a L=520m	150,000	불가	-	보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시급성이 떨어지며, 가로수는 구재정여건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33	법2동 소룡골 공원내 농구장바닥 우레탄 교체	법동 197-1번지	300㎡	23,000	불가	-	우레탄바닥재 설치시 소음발생으로 인근주민 불편초래
34	법동 범바위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법동 195-2번지	1점	3,000	반영	3,000	규모축소 설치 (5점⇒1점)
35	법2동 주민센터 4층~5층 화장실리모델링	법동 192-1번지	1식	15,000	장기 과제	-	구재정여건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36	주거밀집지역 악취방지용 배수커버 설치공사	신탄진동 2통내 인접지번	악취방지 뚜껑 설치 N= 85개소	30,000	반영	30,000	
37	신탄진4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신탄진네거리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개소	34,000	장기 과제	-	우선 차량탐제형을 이용단속하고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실시 등 장기적 검토할 사항임
38	신탄진8길 도로포장 공사	신탄진동 121-36번지	L=430m, B= 8.4m (A=36.12a)	100,000	불가	-	요철 및 파손부분은 정비하여 양호한 상태로 신탄진뉴타운 사업지구로 별도 예산투자 불가
39	삼정동 마을애프교체	삼정동 산8-1번지	1식	4,000	반영	3,000	
40	석봉동 417-72번지선 하수도 정비	석봉동 417-72번지 인근	(D=300mm) L=20m	5,000	반영	5,000	

(단위:천원)

연번	건의내용				검토 결과	예산 반영	비고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41	등마루공원내 우레탄 및 조합놀이대 설치	석봉동 202-1번지	1조	25,000	반영	20,000	
42	석봉시장 7길 도로 덧씌우기 공사	석봉동 417-2번지 ~ 406-2번지	L=150m, B=5.5m (A=8.25a)	20,000	반영	20,000	
43	행정게시판(LED) 설치	석봉동 금강엑슬루 타워 인근	L=9m, B=1m	20,000	장기 과제	-	도로에 설치는 불가 하며, 금강엑슬루 타워 입주후 장소 선정 등 관련법 검토 후 시행
44	석봉 망골10길 도로 노면 정비공사	석봉동 748번지	L=40m, B=12.5 (A=5a)	20,000	반영	지역 (市통보)	도로관리청인 市건설본부에 사업시행 건의요청(11.10.17)
45	덕암동 2-3번지선 하수구 정비	덕암동 2-3번지 일원	맨홀설치 4개소, L형측구 보수 60m	15,000	반영	15,000	
46	덕암공원내 정자 설치	덕암동 16-1번지	과고라 1조	12,000	반영	10,000	
47	덕암동 126-16번지선 등산로 정비	덕암동 126-16번지 일원	계단(L=6m, B=1m) 및 난간(L=6m)	10,000	반영	6,000	
48	무지개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평촌동 537-1번지	탄성포장 300㎡	22,000	불가	-	탄성포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비용과다 (매년교체)
49	덕암동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덕암동 48-2번지	1식	17,000	장기 과제	-	전체적인 공간확보 계획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50	상서동 산7-13번지 일원 등산로 공원 정비	상서동 산7-13번지 일원	1식	30,000	반영	10,000	
51	덕암1통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덕암동 4-31번지	1식	4,000	반영	4,000	
52	목상 다사랑(아) 앞 공원담장 철거	목상동 185-3번지	담장철거 200m	15,000	반영	-	'11년 자체인력 활용 통행로 우선 확보

제 4 절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원 구 환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II.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새로운 변화

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 자치단체 예산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물적 자원(돈)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좋은 활동을 추진하려해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자치단체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돈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충당하게 되며, 징수된 세금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활동을 위해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도 다양한 활동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함으로써 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이처럼 주민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세입이라 하며, 주민의 세금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세출이라고 한다.

자치단체는 세입과 세출을 통해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보통 1년을 의미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만큼의 세금보다 적게 징수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양만큼 세금을 징수하되,⁶⁾ 법률에 따라 공평하게 계획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계획한 만큼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전자를 세출예산이라 하며 후자를 세입예산이라 하는데, 이러한 세입과 세출을 한마디로 총칭하여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사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을 자치단체 예산이라고 한다.

예산(豫算)은 말 그대로 예정된 수치를 의미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이란 자치단체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만큼 거두어들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미리 문서화한 계산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⁷⁾

6)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부예산은 양입제출(量入制出)이 아니라 양출제입(量出制入)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서를 의미한다. 'budget'이라는 용어는 'money bag' 또는 'public purse'에서 유래되었는데, 정부 재정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서를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재무장관이 가죽으로 된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자치단체 예산을 과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결과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자치단체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인하고 징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적 의미와, 그 결과로서 나타난 문서화된 계산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서화되기 위한 과정과 문서화된 계산서 모두 예산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기본구조

구분	0000년	구분	0000년
자체수입	xxxx	1. 일반공공행정	xxxx
지방세수입	xxxx	2. 공공질서 및 안전	xxxx
세외수입	xxxx	3. 교육	xxxx
의존수입	xxxx	4. 문화 및 관광	xxxx
지방교부세	xxxx	5. 환경	xxxx
보조금	xxxx	6. 사회복지	xxxx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xxxx	7. 보건	xxxx
합계	00000	8. 농림수산	xxxx
		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xxxx
		10. 교통 및 물류	xxxx
		11. 국토 및 지역개발	xxxx
		12. 과학기술	xxxx
		13. 예비비	xxxx
		합계	00000

2. 자치단체 예산의 재정적 의미

1) 자치단체 예산과 총 재정규모

자치단체의 역할은 행정국가, 복지국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양적, 질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계획적인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된다.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방(leather bag)에 휴대하면서 비롯되었다(Burkhead and Miner, 1971: 12).

따라서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만이 아니라 기업과 가계 중 모든 경제행위의 주체에 적용 가능한 국가의 재정활동 중 1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예정 계획서를 의미하며(김명규, 1986: 2), 1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총괄적으로 계상·편성하여 국회(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작용의 준칙 규범을 의미한다(허영, 2003: 867).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이외의 기금이라는 재정활동이 존재하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된다.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보편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활용하는 것을 일반회계 예산이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정활동의 범위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세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요금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 상수도사업은 대표적인 예인데, 모든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이용한 사람으로부터 이용한 만큼 요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분리하여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특별회계 예산), 지방상수도사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은 지방상수도사업에만 사용하게 된다.

지방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XXX,XXX	-----> (=)	지방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XXX,XXX
--------------------------------	----------------------	--------------------------------

또한 자치단체는 미래의 특정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해당 특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 부분씩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과는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재원을 축적(조성)하고, 재원 일부를 미래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운용)한다. 따라서 기금의 경우는 세입, 세출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성, 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일정한 재원을 조성하였다가 차후에 운용하기 때문에 조성규모와 운용 규모는 일치하지 않으며, 조성규모가 운용규모보다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조성 > 운용). 기금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특정 행정목적의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조성된 금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필요한 만큼 재원을 동원하여 활용하지만,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게 된다. 돈을 빌릴 경우 매년 일정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다시 주민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능의 연계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분야 - 부문은 다음 <표 2>과 같이 16분야 69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즉 중앙 정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통일·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항목은 중앙정부와의 행정기능 통합을 위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2> 분야 - 부문 분류체계

16 분야 69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품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자료: 기획재정부(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3)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예산순계와 예산총계의 개념은 회계 간에 중복 거래되는 금액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중복 거래되는 금액을 포함하면 예산총계, 중복 거래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예산순계라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 간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13조).

예산순계와 예산총계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회계 간의 거래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회계 100원, 특별회계 40원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10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된 경우 10원이 일반회계에도 포함될 수 있고 특별회계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100원이지만, 특별회계에 10원을 전출함에 따른 규모는 90원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0원이 전입되어 규모가 40원에서 50원으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일반회계 100원, 특별회계 50원으로 계상하면 총 예산규모는 150원이 되는데, 실제로는 140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거래 간에는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표 3> 거래 중복 사례

일반회계	
국방	20
경제	25
복지	25
환경	10
노동	10
전출금	10
계	100

→

특별회계	
특정사업	40
전입금	10
계	50

따라서 중복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예산순계 기준으로는 140원이지만, 중복 거래를 포함하는 예산총계 기준으로는 150원이 된다. 예산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는 순계 기준이 타당하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총계 기준이 설득력이 있다.

3. 자치단체 예산의 법률적 의미

예산이라 함은 1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국회(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성립하는 범규범의 일종으로 정의된다. 즉 예산과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데, 예산과정은 예산안을 마련하는 권한(예산편성권),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예산심의확정권),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예산집행권), 집행된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인하는 권한(결산승인권)으로 구분된다.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은 행정부에 있으며,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권은 의회에 있다. 이처럼 예산과정의 절차 및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명확한 법적 책임 한계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한 기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권력 남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 절차 및 규정에 의할 경우 우리의 예산과정은 행정부 중심의 예산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예산의 편성권한이 입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입법부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초기 주도권은 사실상 행정부가 갖게 된다.⁸⁾ 따라서 입법부의 예산통제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예산을 법률처럼 의결하고 법률처럼 공포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것인데, 예산이 법률 형식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예산을 법률처럼 의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 미국 등은 예산을 법률처럼 의결하고 있어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의 개념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법률과 예산의 차이

구분	법률	예산
제출권	국회의원, 정부(헌법 제52조)	정부(헌법 제54조 제2항)
수정권	국회 수정보완 가능	정부동의 없이는 불가능(헌법 제57조)
의결권	헌법 제53조에 별도 규정	헌법 제54조에 별도 규정
공포권	공포를 통한 대외효력(헌법 제53조)	공포규정 없음(헌법 제54조)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인정(헌법 제53조)	국회의 심의거부권 불인정 대통령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불인정
개정권	개정 가능	원칙적 개정 불가능(예외: 추경예산)
효력	개정, 폐지시까지 지속	일반적으로 1년
기속	국민	국가기관의 재정행위
상호성	법률은 예산에 영향	예산은 법률에 영향 없음

8) 예산은 입법적 통제수단(legislative control)과 행정관리적 수단(executive management)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국가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예산은 입법적 통제수단에서 행정관리적 수단으로 이행되고 있다(Smith, 1944: 182).

II.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새로운 변화

1.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를 의미하며,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4).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성과관리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program budgeting)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비교

도 입 전			도 입 후		
과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프로그램 단위사업	예산액	산 출 기 초
2111 문화예술관리	5,557,412		문화관광국	5,557,412	
100 경상예산	2,433,664		체험문화예술기반구축	2,384,556	
110 인건비	198,339		향토자료관운영	30,460	101-04 사무보조인건비 12,048
101 인건비	198,339				201-01 운영물품 200,000원*12월 = 2,400
	84,228	02 수당			소개객자 3,000원*2,000부 = 6,000
		시간외근무수당(일반직)			유물보존 5,000,000원*1식 = 5,000
		6,843원*21인*38시간*12월			학술학회가입비
		*1.005=65,496			90,000원*3개학회 = 270
	114,111	04 일용인부임			대형난로연료비
		우암자적공원 청소인부			516원*10*105일 = 542
		향토자료관 사무보조			202-01 자료수집 및 학회참석
					40,000원*2인*3일*5회 = 1,200
					405-01 유물격납서가 구입
					150,000원*20개 = 3,000
120 경상적경비	2,235,325		고대지역문화체험		
201 일반운영비	209,611		레저관광산업육성		
	209,611	01 일반운영비			
		일반주용비			
		시문화상 시상			
		향토자료관운영물품			
		향토자료관사무반비			
		<연료비>			
		향토자료관 대형난로			
		516원*10*105일 = 542			
202 여비	24,038				
	24,038	01 국내여비			
		문화자료수집			
		40,000원*5인*27회 = 5,400			
		향토자료관 자료수집 및 학회참석			
		40,000원*2인*3일*5회 = 1,200			
220 자체사업	13,351				
405 자산취득비	13,351				
	13,35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부대장비			
		351			
		렌지후드			
		45,000원*1개 = 45			
		향토자료관 유물격납서가			
		150,000원*20개 = 3,000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출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2)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유래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관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었다.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는 대체적으로 예산제도 개혁과 업무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특히 업무성과평가는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근간으로 정착되었다(공병천, 2004: 68; 문영세, 2001: 151-181).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2000년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2003년에는 '성과관리제도'로 변화되었으며, 2004년 말에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도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사업예산제도)가 실시되었다

<표 5>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연혁

일시	내용
1999. 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마련 - 성과관리 경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 단계적 도입 추진
1999. 6~7	16개 시범기관이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및 수정, 보완 - 성과계획서 내용 중 성과목표 및 지표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
1999. 12	2000년 예산 국회확정 이후, 16개 시범사업기관이 성과계획서를 최종 제출
2000. 3~4	16개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2001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하달 - 12개 기관을 시범기관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총 28개 기관)
2001. 6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 11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총 39개 기관)
2003. 5	성과관리제도 시행 방안 시달 -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명(평가결과에 따른 관리)
2004. 5	20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시달 - 각 행정부서는 성과목표와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하는 성과계획서 제출 - 성과계획서 제시된 목표치와 집행 후 실적치 비교하여 예산편성에 환류
2004. 11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지향의 선진 재정운용체계의 토대 - 정책사업으로서의 개별 프로그램이 예산과정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집행결과 평가의 단위
2007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시행
2008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 시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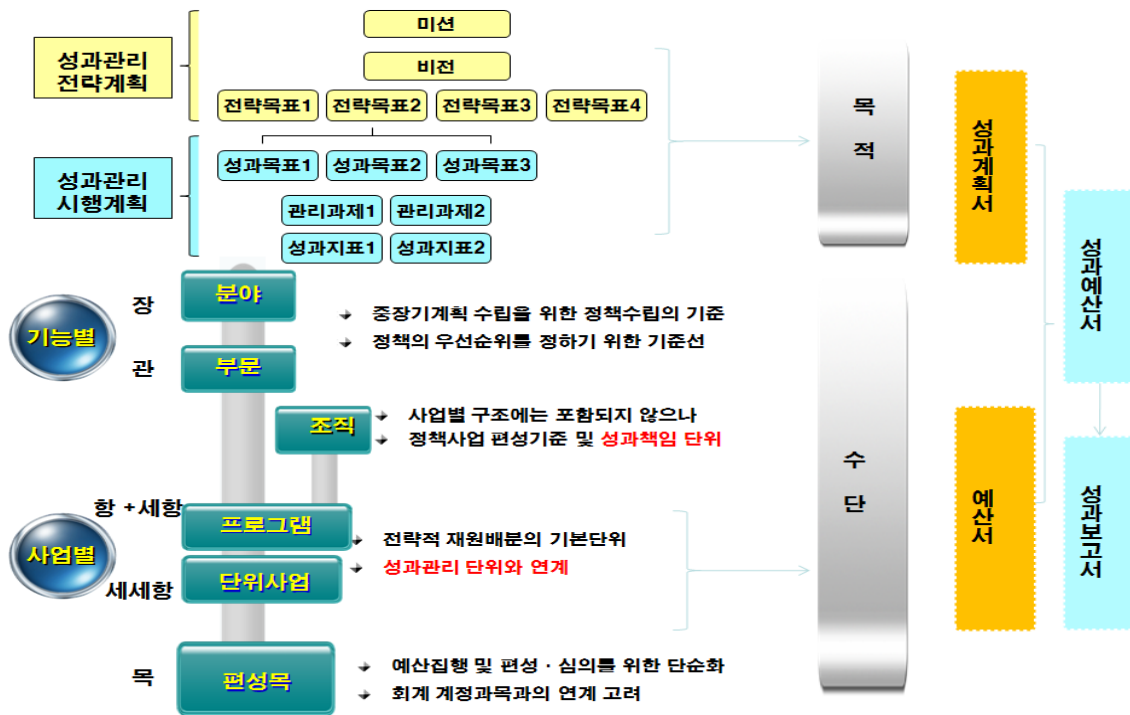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 구조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예산개혁은 성과관리제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서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프로그램 예산제와 성과관리의 연계는 성과계획서의 작성에서 비롯된다. 성과계획서는 미션(Mission) - 비전(Vision) - 전략목표(strategic goals) -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⁹⁾ 등으로 구성되는데, 성과계획서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적 가치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분야 - 부문 - 프로그램(정책사업) - 단위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예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하는데, 예산서는 목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계한 성과예산서는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결을 위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틀은 기존의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장 - 관 구분을 분야 - 부문으로 재편하고, 조직 및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항 - 세항 구분을 프로그램 (정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사업의 하위로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비목을 설정한다.

<그림 2>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기본 구조



9) 임무는 기관 고유의 사명과 역할을 의미하며, 비전은 임무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또한 전략 목표는 기관업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의미하며,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의 개념으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목표들로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이라고도 한다. 아울러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은 절차 및 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략계획단계에서는 상·하위 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목표와 수단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 간에 중복되거나 목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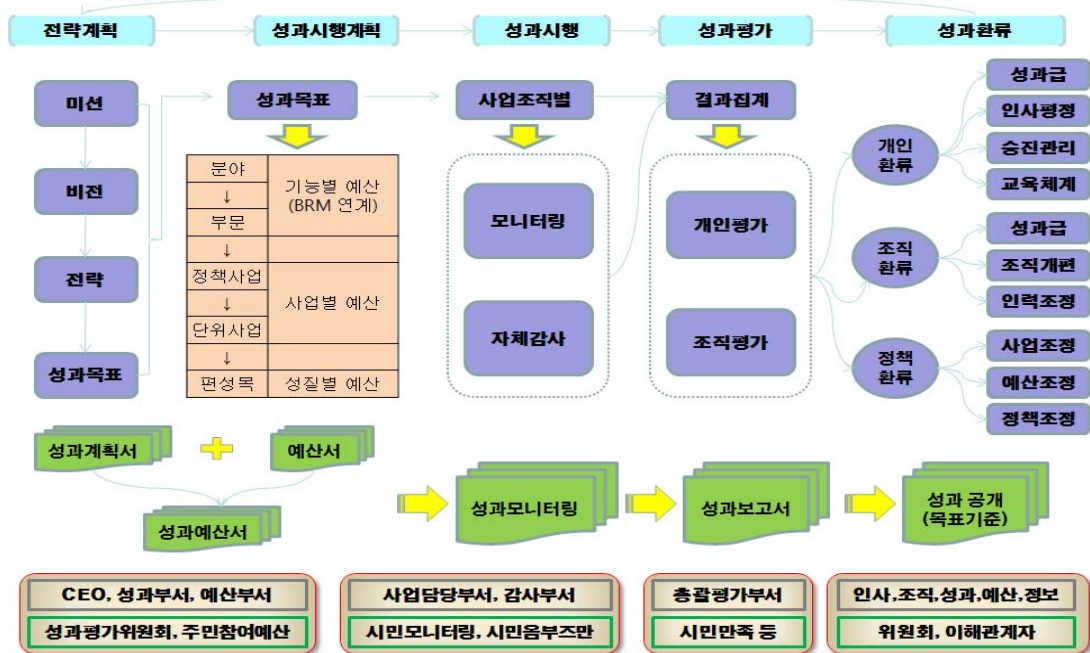
둘째, 성과시행계획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예산을 반드시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성과목표와 프로그램(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성과시행단계에서는 사업조직별 성과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성과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과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넷째, 성과평가단계에서는 성과시행에 따른 결과를 당초 전략계획 및 성과시행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단계이므로 결과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섯째, 성과환류단계에서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실시되는데, 크게 개인 환류, 조직 환류, 정책 환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 환류를 통해 성과급, 인사평정, 승진 및 교육관리에 접목하고, 조직 환류를 통해서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을 모색한다. 또한 정책 환류 측면에서는 사업 및 예산조정과 정책조정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성과환류 단계를 통해 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사업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바람직한 연계 구조



자료: 원구환(2010b: 23-48)

4)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단점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성과관리와 연계한 프로그램 예산제의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투입중심적 공공부문의 운영방식에 성과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투입, 산출, 성과 간의 연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결과와 책임 중심의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예산집행에 따른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 부처의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예산요구단계에서 무조건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성과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셋째, 성과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 운영에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역량 위주로의 조직재편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각 부처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넷째,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화시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인 환류, 조직 환류, 정책 환류를 도모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미션 및 비전,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에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없다. 성과목표와 프로그램,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개인적, 조직적, 정책적 환류를 도모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환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예산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2.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성인지예산을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제도를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기존의 예산제도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또는 몰성적(gender blind)인 것으로 인식하고, 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은 성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국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은 1984년 호주에서 도입된 이래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이 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제도이며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성인지 예산은 여성 지원 예산과는 차원이 다른 제도이다. 성인지 예산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성평등 사회의 구현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 성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지원만을 위한 예산제도가 아니라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균형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정은 예산의 전 과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즉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단계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서를 성인지적으로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이 개별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특정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는 예산 전체에 대해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는 법적 근거에 의해 정부 예산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운영에 있어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에 비해 뒤늦게 도입되었다. 즉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7년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규정되었으나,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은 2010년 회계연도로 유예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운용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고, 재정당국이 직접 작성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스웨덴뿐이다. 특히 법적근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는 법정서류 형태인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 한다.

<표 6> 성인지 예산제도의 국가별 비교

구분	한 국	프랑스	스웨덴	호 주
예산(안)과의 관계	예산(안) 첨부서류	예산(안) 첨부서류	① 예산(안), ② 예산(안) 첨부서류	무관 (소책자 형식의 단순문서)
명칭	성인지 예산서	재정법안 통합보고서 - 남녀평등정책	②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 Between Women and Men	Women's Budget Statement
작성부서	각 중앙부서	고용사회연대부	① 각 중앙부서, ② 재정부(성평등국이 협조)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실
국회제출 여부	○	○	○	X (‘84~‘96년까지 제출)
근거법령	○	○	X	X
대상	성평등관련사업, 일반예산사업 중 성별수혜분석가능사업 (‘10년 195개)	성평등관련사업 (‘10년 27개)	① 일반예산사업 (48개 정책영역) ② 특정의제(8개)	성평등관련사업 (‘98년 15개 영역, ‘08년부터 1개 영역)
차년도 예산 분석여부	○ (사업별 예산 성평등목표, 가대효과, 성별수혜분석)	X	○ (사업별 예산 성평등 목표)	X
도입시기	‘10년	‘01년	‘03년	‘84년
특징	대상사업이 광범위하며, 사업별로 성별수혜분석 가능	과거 사업 성과에 대 한 서술식 분석	①성인지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과 ②성별 경제적 자원 배분 현황을 서술한 보고서를 병행 제출	특정의제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보도자료(2010. 5. 12).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안

성인지 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성별 영향 분석에만 국한된다면 실효성이 없으며,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성인지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책의 성별 분석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성인지 예산서의 범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주체 및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작성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

넷째,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정책적 고려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지출한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방관서에서 제시한 성인지 예산만을 합계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섯째,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적 규정 및 절차가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제출된 이후 성인지 예산서가 지방의회의 법적 심의기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다.

여섯째,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단순히 성차별이 개선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없으며, 평가 등을 통해 어떻게 환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 특히 성인지 예산서에 성인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연계되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정책적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의 재정정보공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통합재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 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공시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③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④ 채권관리현황, ⑤ 기금운용현황, ⑥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⑧ 통합재정정보, ⑨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0조).

공시항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통 공시 항목으로는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③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④ 채권관리현황, ⑤ 기금운용현황, ⑥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기타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공시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반면에 특수공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규정한 사항을 공시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공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8월에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69조).

공시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

국가 예산제도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가 존재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소송제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국가 예산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¹⁰⁾

1) 주민참여 예산제도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 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¹⁾

첫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국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제도로써 국가의 예산편성과정과는 무관하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으로서 국가는 광범위한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참여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의 독점성을 지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이든 지방이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과정, 예산심의·의결과정, 예산집행과정, 결산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과정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예산심의·의결과정은 의회(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 예산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하는 지방의회의 경우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과정이 미흡하여 집행부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집행부 위주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세금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이며,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과는 무관한 제도이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 소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국가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송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재무 회계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 시의 경우인데, 1988년 브라질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이 승리하면서 주민들이 시 예산안을 짜는데 직접 참여하는 제도(OP, orçamento participativo)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산 작성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예산 조정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민중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주민참여제도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연규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9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기타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전국적인 참여가 이뤄진 것은 1999년이다. 전국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예산감시네트워크'(함께하는 시민행동)를 결성하여 예산참여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참여연대가 2001년 4월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판공비 전국네트워크'를 결성, 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중심으로 예산감시 운동을 전개한 사례나 2001년도에 '서울지역예산감시네트워크'가 결성돼 서울시 예산에 대한 참여운동이 시작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공약이 추진되었고, 2003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다.¹²⁾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발안제도 개선, 주민투표제 실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소송제,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참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의무규정으로 전환된 계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중점 공약추진사항으로 제기되었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발전방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세금 가치를 구현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민, 집행기관, 의회, 시민단체 등이 올바른 참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2)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충북 청주시, 대전시 대덕구 등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의 형태를 구분할 때 주민들이 실제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Arstein, 1969),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경우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단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¹³⁾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되며, 집행기관의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예산 주무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 예산안에 대한 사정을 끝내고 예산 주무부서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참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기 지방재정 수립단계,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단계, 예산요구서 사정단계, 의회 제출 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효율적 참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기타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민소송제¹⁴⁾

(1) 주민소송제의 연혁

주민소송제는 본래 영국의 납세자소송에서 발달되어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을 본보기로 194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소송제를 도입·시행하였다. 특히 일본은 1963년 지방 재무회계제도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도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송제를 도입하였으나, 미활용으로 1962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주민소송제에 대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1월 27일 주민소송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공포(2005년 8월 5일 동법시행령 공포)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3)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주민소송제에 대해서는 안용식·강동식·원구환(2006: 163-173)에서 수정 발췌하였다. 외국이 주민소송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2005)를 참조할 것.

민선자치 실시 이후 각종 이권을 둘러싼 지역 토착세력과의 민관유착으로 자치단체장 등 일부 지방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가 상존하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행사성 사업추진과 중복투자 등에 기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감사를 통한 위법·부당 사례 적발도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에 그쳐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라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 주민통제 체제 구축을 통한 심리적 예방효과로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다.

(2)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은 지역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특정한 법규에 의해서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주민소송은 공익소송으로서 주민 대표소송의 한 종류이며, 주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가 아닌 지방공공의 이익보호 내지 침해의 예방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기본적으로 객관소송¹⁵⁾ 중 민중소송¹⁶⁾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의 개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재무회계 뿐 아니라 비재무회계 사항도 소송에 포함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위법한 재무회계에 한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의미)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주관소송은 주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주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소송의 대상과 소송을 제기하는 자 간에 일정한 이해관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소송제기의 요건으로 한다. 즉 주관소송에 있어서는 권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기 요건 상의 제한이 있다. 이에 반해 객관소송은 주로 행정작용의 객관적 적정성(적법 타당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객관소송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주관소송과 같은 소송제기 자격의 제한이 없다.

16) 민중소송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국민투표법 제72조), 선거에 관한 소송(공선법 제222조)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다수인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유형인데 비해,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에 제기되는 소송(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의 위법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등)유형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의미)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①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음), 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③ 게을리 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이나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3항).

(3) 주민소송의 결과

주민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와 변상명령이 가능하다.

우선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8조).

다음으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9조).

부 록 1

예산 · 회계 용어

예산 · 회계 용어



● 가용자원(可用財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함.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자원만을 일컫음.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임. 가용재원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재정지출에 사용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 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경리관(經理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그 증감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경비를 말함. ①공무원 인건비 ②방위비 ③지방교부금 ④국채이자 ⑤계속비 연부액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⑥사회보장관련경비 등이 있음

경직성 경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범위를 축소시키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산 자원의 사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정팽창의 요인이 되기도 함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계약(契約, contract)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96.12.30 누 14708)

● 과태료(過怠料)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중 질서벌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교부세(交付稅)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인과 개인)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 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함.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님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가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의 정체와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음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 민간이전(民間移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운수업체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함

● 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임

● 법적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등을 말함

●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

보통교부세는 그 재원을 용도와 목적을 지정함이 없이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 일단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임

●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함

● 본예산(本豫算, main budget)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시·도는 15일전, 시·군·구는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 : 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이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 부동산교부세(不動產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 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 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 분권교부세(分權交付稅)

국고보조사업의 일부(149개 사업)를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전의 통로역할을 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됨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94%이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편성과 운영과 자치단체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임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임.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이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사전예산제도(事前豫算制度, pre-budget)

중기적 재정운용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중기 거시 전망과 재정 목표, 그에 따른 총 지출한도(global ceiling)와 분야별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등에 대해서 본예산(full budget)의 편성에 앞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전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예산제도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하는 재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줌

● 선금급(先金給)

선금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예: 토지 가옥의 임차료, 운임 등)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용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기타 잡종금 등이 있음

●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

● 수정예산(修正豫算)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의 성립 후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수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군·구는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수정예산 제도임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실행예산(實行豫算, executive 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填)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 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 예산의 이용(豫算의 移用)

예산의 이용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의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의 이체(豫算의 移替)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집행품의(豫算의 執行稟議)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됨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기능유지 및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일상경비(日常經費)

일상경비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는 경비임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음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한도액(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이라 함은 그 차입의 현재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내의 합계액은 아님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계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

● 입찰(入札)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적·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특정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해연도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는 예산제도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외국의 입법예>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통상 4~5개월분의 예산을 확정함)와 가예산제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

- 假예산: 국회가 1개월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예산이 의결되어야 함
(과거 한국, 프랑스)
- 暫定예산: 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의회의결로 허용(영국, 일본)
- 踏躑예산: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의 답습을 허용(미국)
- 準예산: 준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음(우리나라, 독일)

●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뉨.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함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음

●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출(支出)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협의의 지출은 지출원인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임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text{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times 100$$

-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 투·융자사업 심사(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음

● 행정경비(行政經費)

행정경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에서의 행정운영경비와 비슷한 개념임
행정경비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활동의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등이 해당됨.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이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됨

● 회계관계직원의 범위(會計關係職員의 範圍)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부 록 2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 정 <2005.12.09 조례 제669호>

개 정 <2006.12.22 조례 제719호>(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 정 <2007.12.21. 조례 제772호>(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 정 <2008.07.25. 조례 제800호>(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대덕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대덕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인 이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④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대덕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대덕구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

제9조(운영) ①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④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부분과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팀 주무주사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 ⑥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⑦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3.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5.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6.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덕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학교) ①구청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②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필요시 개최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1조 규정의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10인 이내로 한다.
 ③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④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⑨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기타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부장, 기획감사팀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2 조례 제719호>,<개정 2007.12.21. 조례 제772호>
<개정 2008.7.25. 조례 제800호>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⑤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⑦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 예산편성·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위원회 대표 등 9인 이내로 주민 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회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연구, 개정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강구
4.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5.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69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http://www.daedeok.go.kr>